

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 (송파구 잠실동 187-10번지외 4필지)

의안 번호	7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「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」의 4대 분야 가운데 ‘살자리’ 대책의 일환으로서 “역세권 청년주택”을 도입함.
- 나.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에 제한적인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여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임.
- 다. 용도지역 변경 등은 기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인접할 경우에만 인정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로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서울시 도시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음.
- 라.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 187-10번지외 4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(안)

대상지 위치	구 분	면 적( $m^2$ 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송파구 잠실동 187-10번지 외 4필지	계	1,511.10	-	1,511.10	-
	제3종일반주거지역	1,511.10	감)1,511.10	-	
	일반상업지역	-	증)1,511.10	1,511.10	

### 나. 도시관리계획사항

- 제3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잠실광역중심제2지구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도 1부.

※ 작성자: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 정채문(☎ 2133-629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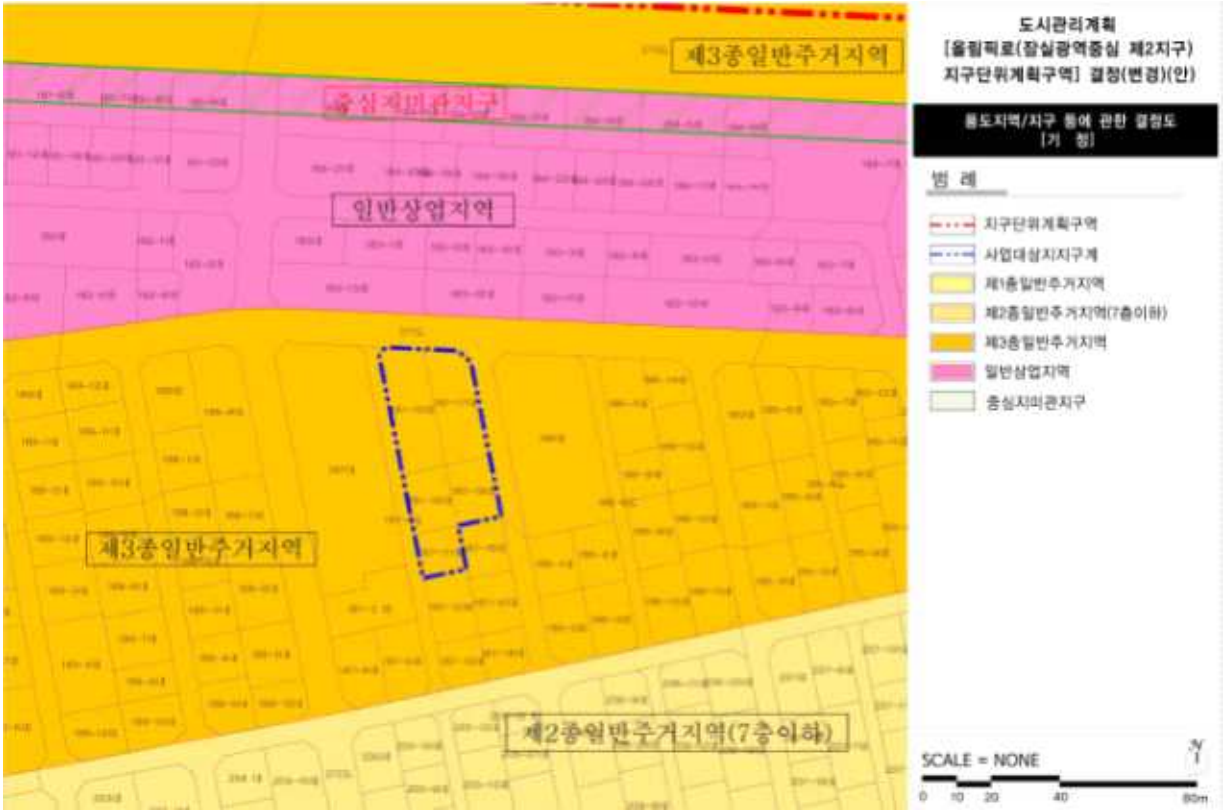
**붙임**      **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도**

□ **위치도**



# □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도

## ○ 기 정



## ○ 변 경

